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 폐지 후 기능 이관 >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6609호)

2025. 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 폐지 후 기능을 문화유산위원회로 이관	3

I.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정 부

나. 제 출 일: 2024. 12. 17.

다. 회 부 일: 2024. 12.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청에 두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 실적이 저조한 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문화유산의 소유자가 기증하는 지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의 수증 여부를 결정할 때 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문화유산위원회를 거치도록 변경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 폐지 후 기능을 문화유산위원회로 이관 (안 제8조 및 제22조의8)

가. 개정안 요지

- 개정안은 문화유산의 수증 여부를 심사하는 문화유산수증심의
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문화유산위원회로 이관하려는 것임
(안 제8조제1항 및 제22조의8).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①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 사·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 청에 <u>문화유산위원회</u> 를 둔다.	제8조(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① ----- ----- ----- - <u>문화유산위원회</u> (이하 “문화유 산위원회”라 한다)-----.
1. ~ 11. (생략) ② ~ ⑩ (생략)	1. ~ 11. (현행과 같음) ② ~ ⑩ (현행과 같음)
제22조의8(지정문화유산 등의 기 증) ① (생략)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 라 문화유산을 기증받는 경우에 는 <u>제3항에 따라 설치된 문화유</u>	제22조의8(지정문화유산 등의 기 증)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문화유산위원회</u> -----

<u>산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u> <u>③ 지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가 기증하는 문화유산의 수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를 두며, 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④ ~ ⑥ (생략)	----- -----. <삭 제> ④ ~ ⑥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 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는 현행법 제22조의8제3항에 따라 지정 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가 기증하는 문화유산의 수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국가유산청에 설치된 위원회로, 문화유산 전시 및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하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됨¹⁾.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①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문화유산위원회를 둔다.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3.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 문화유산위원회는 현행법 제8조에 따라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과 해제, 보호물·보호구역 지정과 해제, 현상변경, 국외 반출,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설치된 위원회로, 현재 92명의 위원(임기 2년, 2024.5.17.~2026.5.16.) 이 건축문화유산, 동산문화유산, 사적, 매장유산, 근현대문화유산, 민속문화유산, 세계유산 및 공능문화유산의 8개 분과별로 소속

-
4. 삭제
 5.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변경에 관한 사항
 6.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국외 반출에 관한 사항
 7.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8.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등록 말소 및 보존에 관한 사항
 - 8의2.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구역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에 관한 사항
 9. 매장유산의 발굴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0.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관리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1. 그 밖에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제22조의8(지정문화유산 등의 기증) ①** 지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는 국가유산청에 해당 문화유산을 기증할 수 있다.
-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을 기증받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설치된 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지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가 기증하는 문화유산의 수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를 두며, 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의 기증이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
- ⑤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증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시상(施賞)을 하거나 「상훈법」에 따른 서훈을 추천할 수 있으며, 문화유산 관련 전시회 개최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른 기증의 절차, 관리·운영방법 및 제5항에 따른 추천 및 예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5(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2조의8제3항에 따른 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이하 “수증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수증심의위원회 위원은 문화유산 전시 및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다.
- ③ 수증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④ 수증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되어 있으며²⁾, 2022년 91건, 2023년 95건, 2024년 86건의 분과 위원회를 개최하였음.

[문화유산위원회 분과 현황]

구분	문화유산위원회			분 장 사 항
	계	원소속	겸임	
건축문화유산분과	11	11	-	유형문화유산 중 건조물에 관한 사항
동산문화유산분과	10	10	-	유형문화유산(건조물 제외)에 관한 사항
사적분과	15	15	-	기념물 중 사적지 및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근대 시설물 제외)에 관한 사항
매장유산분과	10	10	-	매장유산에 관한 사항
근현대문화유산분과	12	11	1	기념물, 민속문화유산 중 근현대 시설물 및 등록문화유산에 관한 사항
민속문화유산분과	10	10	-	민속문화유산에 관한 사항
세계유산분과	11	9	2	세계유산 등재, 잠정목록 대상 조사·발굴 등에 관한 사항
궁능문화유산분과	13	11	2	궁능유적본부장의 소관 문화유산에 관한 사항
총 계	92	87	5	

2) 「문화유산위원회 규정」 제2조(구성) 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삭제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⑥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두는 문화유산위원회(이하 “시·도문화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인 사람을 문화유산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문화유산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22년	91	-	-	-	91	91	-
2023년	95	-	-	-	95	95	-
2024년	86	-	-	-	86	86	-
총 계	272	-	-	-	272	272	-

※ 자료: 국가유산청

- 그런데, 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는 위원회 설치 근거가 신설된 법 시행일(2021년 6월 9일) 이후 현재까지 미구성되었고, 문화유산을 기증받는 경우에 한하여 비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위원회를 상설기구화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운영 실적이 저조한 문화유산수증위원회를 폐지하고 문화유산위원회에서 문화유산 수증 여부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지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의 수증 여부를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의 지정·해제, 현상변경 심의 등에 전문성³⁾을 갖춘 문화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② 문화유산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인류학·사회학·건축·도시계획·관광·환경·법률·종교·언론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유산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가능하고, 위원회를 폐지·통합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측면에서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현행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하나로 지정문화유산 등을 기증받는 경우 수증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문화유산위원회의 조사·심의사항임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개정안에 대해 국가유산청은 전부 수용의견임.

문 의 처
02)6788-5384

참고 1

문화유산위원회 현황

1. 설치목적

-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사·심의를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문화유산위원회를 설치함

2. 주요내용

- 설치근거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 제8조(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 기능 : 국가유산청 자문위원회(심의기구) * 위촉권자 : 국가유산청장
 -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

- ▶ 문화유산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보호구역 포함)의 지정 및 해제 사항
- ▶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및 국외반출, 역사문화환경 보호 사항
- ▶ 매장유산의 발굴 및 평가 사항
- ▶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및 등록말소 사항
- ▶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관리에 중요한 전문적 및 기술적인 사항 등

- 자격요건 : 「문화유산법」 제8조제2항, 「문화유산위원회 규정」 제11조제1항

문화유산 위원 자격요건

-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인류학·사회학·건축·도시계획·관광·환경·법률·종교·언론 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문화유산 전문위원 자격요건

-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 ▶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최근 3년간 문화유산위원회 회의개최 실적

구 분	총 계	본 회의			분 과 위 원 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22년	91	-	-	-	91	91	-
2023년	95	-	-	-	95	95	-
2024년	86	-	-	-	86	86	-
총 계	272	-	-	-	272	272	-